

정당한 권리행사와 협박의 구분 - 협박죄, 공갈죄 성립여부 판단기준: 전주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52 판결



1. 협박죄 기본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독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그 권리가 행사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15:00경 전북 고창군에 있는 유한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 매매대금 중 잔금인 1,000만 원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발 상무인 피해자 K에게 '잔금을 보내지 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6. 6. 17. 11:20경 위 사무실로 ○○개발의 석산 개발 인·허가 및 지도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 L 및 산림공원과 담당 공무원인 M과 함께 가서 피해자에게 '나는 오늘 기자로서 취재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 공무원들에게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불법 폐기물 방치 문제를 확인하세요. 제가 취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개발의 불법 폐기물 방치 문제를 보도할 것처럼 피해자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 협박혐의 무죄 BUT 2심 판결 - 협박혐의 유죄

조사자문,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화해계약, 합의, 공탁 등 One-Stop 대응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